

# 1.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도란?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됨. (수입금액=매출액)

업종구분	기준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아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 6백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	2천 4백만원

※ 2011년 1월 1일 이후의 신규사업자는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업종구분	기준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 5백만원

##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앞서 살펴본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년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임.

단, 의사나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 임.

## 2.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계산방법

### (1)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①, ② 중 적은 금액)

$$\text{①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text{② 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 ■ 영업손실 산출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매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이 10%라는 의미는 10%만 부수적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주고, 나머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뜻.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매출)} - \text{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 곱하여 계산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은 제외)	재화의 매입(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

②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매출)}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times \text{배율}$

※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①번의 경우 피해자 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소득금액 계산이 불가하므로 ②번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영업손실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경비 증빙자료가 있어 ①번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도 항상 ②번 방법의 소득금액이 적게 나오므로 결국은 ②번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는 귀속경비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